

特許協力條約(PCT)概要

〈Ⅳ〉

一 承 前 一

⑦ 料 金

PCT出願에 出願인이 納入하는 手數料는 發送料, 國際料(基本料, 指定料), 調査料와 豫備審査를 請求했을 경우에는 取扱料 및 豫備審査料등이다. 이 수수료 가운데 PCT에서 그 額數가 規定되어 있는 것은 국제료, 취급료이며 그 외의 수수료는 國際調査機關, 各國 受理官署등이 決定한다.

納入期日은 발송료, 기본료, 조사료는 대체로 國際出願時이며 지정료는 국제출원시 또는 優先日로부터 12個月 以內이다. 더우기 발송료, 국제료, 조사료는 所定期日까지 납입하지 않았음을 手続관서에서 發見하였을 때는 그 국제출원은 取下한 것으로 看做된다. 그러나 指定國에 의한 再審査請求의 길은 열려 있다.

① 發送料

手続관서에 의한 국제출원의 手続, 국제사무국에의 사본 발송에 대한 수수료로서 납입되는 것이다. 발송료의 액수와 납입기일은 手続관서가 결정한다.

② 國際料

국제료는 기본료와 지정료로서 국제사무국에 납입하되 그 료금과 通貨는 手続관서가, 指定 徵收한다.

가) 基本料

기본료의 액수는 국제출원용지가 30枚 이내의 경우는 45달러, 30매를 超過할 때는 초과하는 1매마다 1달러를 더 받는다. 납입시일은 國際出願時이다.

나) 指定料

지정료는 지정국마다 납입해야 하며 廣域特許

를 願할 때는 한나라어치의 지정료면 된다. 지정료의 액수는 국제출원의 사본을 청구할 지정국에 대해서는 14달러, 사본을 청구하지 않을 지정국에는 12달러를 납입한다.

지정료의 납입기일은 국제출원시 또는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이다.

③ 調査料

조사료는 국제조사 등의 수수료로서 국제조사기관에 납입하게 된다. 그 액수는 각 조사기관이 정하며 납입기일은 국제출원시이다. 조사료와 통화는 手続관서가 결정한다.

④ 取扱料

취급료는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했을 때 국제사무국에 납입하는 수수료이며 국제예비심사 보고의 번역이 필요없을 때는 14달러, 번역이 필요할 때는 14달러가 加算된다.

납입기일은 예비심사를 청구할 때이며 취급료의 징수나 通貨는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된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지정한다.

⑤ 豫備審査料

예비심사등의 수수료는 국제예비심사기관에 直接 納入되며 액수와 납입기일은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정한다.

이 밖에도 手続관서에서 要求하는 경우에는 國內手數料, 국제조사보고 혹은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追加手數料, 特別手數料 등도 납입해야 한다.

⑧ 原文과 翻譯文의 關係

一定한 方式要件을 갖춘 國際出願은 國際出願日로부터 各 指定國에서 正規 國內出願의 效果가 있게 된다. 따라서 出願인은 優先日로부터 20個

